공 개

의안번호	제 198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7. 8. (제 13 차)

의결사항

㈜엠젠솔루션 등 6개사의 공시의무 위반 조치안

※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.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권 대 영
제출 연월일	2026. 7. 8.

1. 의결주문

㈜엠젠솔루션 등 6개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6.3.17.부터 코스닥 상장법인 ㈜엠젠솔루션 등 6개사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, 발견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□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과징금

- ㈜엠젠솔루션[코스닥 상장법인] 36,000,000원
- ㈜에스엠벡셀[유가증권 상장법인] 28,000,000원
- ㈜휴림에이텍[코스닥 상장법인] 93,800,000원

○ 증권발행제한

- 디에스티㈜[前코스닥 상장법인] 1월
- ㈜세영디앤씨[前코스닥 상장법인] 1월
- ㈜썬힐네트웍스[前코스닥 상장법인] 3월

4. 참고사항

※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사항임

가. 관계법규 : <붙임 1>

□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0조, 제164조 제2항 제1호, 제429조 제3항 제2호,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 및 제5호

나. 과징금 산정내역 : <붙임 2>

다. 증권발행제한 조치 산정내역 : <붙임 3>

(별지1)

㈜엠젠솔루션에 대한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는 ㈜엠젠솔루션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 제1항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과징금 36,000,000원을 부과한다.

□ 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○ ㈜엠젠솔루션

- 대표이사 : ☆☆☆
- 사업자 등록번호 : ○○○-○○-○○○○○
- 본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△△△ △△△△△△△△ △△, △△△△△ (△△△, 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)

□ 조치이유

○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-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반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

- ㈜엠젠솔루션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함에도 2021년 반기보고서(제출기한 '21.8.17.)를 9영업일 경과한 2021.8.30.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

(별지2)

㈜에스엠벡셀에 대한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는 ㈜에스엠벡셀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 제1항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과징금 28,000,000원을 부과한다.

□ 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○ ㈜에스엠벡셀

- 대표이사 : ●●●, ★★★
- 사업자 등록번호 : ▶▶▶-▶▶-▶▶▶▶▶
- 본점 소재지 : 충청남도 ▼▼▼ ▼▼▼ ▼▼▼▼ ▼▼-▼▼

□ 조치이유

○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-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반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

- ㈜에스엠벡셀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함에도 2021년 반기보고서(제출기한 '21.8.17.)를 5영업일 경과한 2021.8.24.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

(별지3)

㈜휴림에이텍에 대한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는 ㈜휴림에이텍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 제1항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과징금 93,800,000원을 부과한다.

□ 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○ ㈜휴림에이텍

- 대표이사 : ◎◎◎
- 사업자 등록번호 : ◇◇◇-◇◇-◇◇◇◇◇
- 본점 소재지 : 경상남도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

□ 조치이유

○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-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반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

- ㈜휴림에이텍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함에도 2021년 반기보고서(제출기한 '21.8.24.)를 6영업일 경과한 2021.9.1.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

※ 반기보고서 제출연장신고로 제출기한을 '21.8.17에서 '21.8.24.로 연장

(별지4)

디에스티㈜에 대한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는 디에스티㈜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 제1항, 제160조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4조 제2항 제1호, 「동법 시행령」 제175조 제1호에 의하여 증권발행제한 1월을 부과한다.

□ 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○ 디에스티㈜

- 대표이사 : △△△, ▽▽▽
- 사업자 등록번호 : ▷▷▷-▷▷-▷▷▷▷▷
- 본점 소재지 : 경상남도 ♧♧♧ ♧♧♧♧♧ ♧♧♧♧♧♧ ♧♧-♧(♧♧♧)

□ 조치이유

○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-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반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

- 디에스티㈜는 위반 당시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함에도 2021년 반기보고서(제출기한 '21.8.17.)를 7영업일 경과한 2021.8.26.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

(별지5)

㈜세영디앤씨에 대한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는 ㈜세영디앤씨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 제1항, 제160조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4조 제2항 제1호, 「동법 시행령」 제175조 제1호에 의하여 증권발행제한 1월을 부과한다.

□ 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○ ㈜세영디앤씨

- 대표이사 : ⊙⊙⊙
- 사업자 등록번호 : ◈◈◈-◈◈-◈◈◈◈◈
- 본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■■■ ■■■ ■■, ■■ ■■■(■■■,■■■ ■■)

□ 조치이유

○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-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반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

- ㈜세영디앤씨는 위반 당시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함에도 2021년 반기보고서(제출기한'21.8.17.)를 6영업일 경과한 2021.8.25.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

(별지6)

㈜썬힐네트웍스에 대한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는 ㈜썬힐네트웍스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 제1항, 제160조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4조 제2항 제1호, 「동법 시행령」 제175조 제1호에 의하여 증권발행제한 3월을 부과한다.

□ 피조치자의 인적사항

○ ㈜썬힐네트웍스

- 대표이사 : ◆◆◆
- 사업자 등록번호 : ♣♣♣-♣♣-♣♣♣♣♣
- 본점 소재지 : 전라남도 ◑◑◑ ◑◑◑◑ ◑◑,◑◑ ◑◑(◑◑,◑◑◑◑◑)

□ 조치이유

○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-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반기보고서를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

- ㈜썬힐네트웍스는 위반 당시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함에도 2021년 반기보고서(제출기한 '21.8.17.)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<붙임 1>

관 계 법 규

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제159조(사업보고서 등의 제출) ① 주권상장법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(이하 "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"이라 한다)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파산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60조(반기·분기보고서의 제출)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(이하 "반기보고서"라 한다)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(이하 "분기보고서"라 한다)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,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59조제2항(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)·제4항·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

제164조(조사 및 조치)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,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1.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제165조(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)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하고,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429조(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) ③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,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(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(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(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2. 제159조제1항,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

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75조(금융위원회의 조치)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

1.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
5. 경고 또는 주의

3.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[별표 3] 증권·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

2.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

가. 동기·결과의 판단요소

【 위법행위 동기 】

(1) 고　　의 :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
(2) 중 과 실 :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
(3) 과　　실 :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

【 법규위반 결과 】

○ 증권·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, 증권·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, 사회·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,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.
(1) 사회적 물의야기
(2) 중대
(3) 경미

나. 판단기준

동기 / 결과	고의	중과실*		과실**
		공시위반	보고의무위반	
사회적물의야기	A	C	D	D
중　대	B	C	D	D
경　미	D	D	D	E

* 공시위반 또는 임원보고의무위반에 한한다.
** 불공정거래의 경우 중과실을 포함한다.

3. 조치기준

판단결과	조치기준	
A	고 발	다만,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5.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C(과징금)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, 예외적으로 A(고발) 또는 B(수사기관 통보) 조치를 병과
B	수사기관통보	
C	과징금	
D	경 고	
E	주 의	
비고	① 시세조종행위,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. 다만, 시세조종,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.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.	

5.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

가.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(1)부터 (3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치양정기준은 (4)에 따른다.

(1) 공시위반법인이 아래 ㈎ 또는 ㈏에 해당하는 경우

㈎ 법인이 제시한 최근 사업연도(반기 또는 분기) 재무제표(감사인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무제표)상 다음 각 목의 사유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

a. 완전자본잠식인 경우
b. 당기(반기, 분기)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
c. 부도발생 확인 또는 사용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합계액(가압류 및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제외한다.)이 부과예정 과징금의 100%미만인 경우

㈏ 법인이 상장폐지된 경우

(4) 증권발행제한 조치양정 기준(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는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한다)

위반행위의 중요도 / 감안사유	상	중	하
상향조정사유 발생	12월	9월	6월
해당사항 없음	9월	6월	3월
하향조정사유 발생	6월	3월	1월

<붙임 2>

과징금 산정내역

Ⅰ. 산정원칙

□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/100 (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)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제2호]

Ⅱ. 산정결과

□ 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

(단위: 원)

회사명	구 분	과징금 부과금액
㈜엠젠솔루션	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	36,000,000
㈜에스엠벡셀		28,000,000
㈜휴림에이텍		93,800,000

<붙임 3>

증권발행제한 조치 산정내역

Ⅰ. 산정원칙

□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감안사유에 따라 별표 제3호에 의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최소 1월에서 최대 12월까지 부과

≪ 증권발행제한 조치 양정기준 ≫

위반행위의 중요도 / 감안사유	상	중	하
상향조정사유 발생	12월	9월	6월
해당사항 없음	9월	6월	3월
하향조정사유 발생	6월	3월	1월

Ⅱ. 산정결과

□ 회사별 증권발행제한 조치

회사명	구분	대상기간	중요도	감안사유	기간
디에스티㈜	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	21년 반기	하	하향조정사유*	1월
㈜세영디앤씨		21년 반기	하	하향조정사유*	1월
㈜썬힐네트웍스		21년 반기	하	해당사항 없음	3월

* 위반행위에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

< 참고 :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안 >

□ ㈜에스엠벡셀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**'경고' 조치로 수정의결**

< 수정심의 사유 >

○ 당사자가 반기보고서 **제출 기한 연장 사유**(감사보고서 제출)를 **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**, 지연 가능성·사유에 대해 사전 공시하여 **투자자**들이 반기보고서가 **지연제출**될 것을 **예상**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인 '과징금 2,800만원 부과' 조치를 **'경고' 조치로 수정의결**함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공정시장과	공 시 심 사 국
연 락 처	02-2100-2688	02-3145-8470